

202.34호

### 행 정 명 령

####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이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6월 27일 토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지침을 발행합니다.

- 사업체 운영자 및 건물 소유주,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행정명령 202.17호(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또는 천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요구)의 지침을 준수할 재량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는 행정명령 202.17호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거나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구 또는 강제할 재량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유자나 운영자는 그러한 지침을 집행함만을 이유로 평온함 향유의 약정(covenant of quiet enjoyment) 위반 또는 이행 불능(frustration of purpose)에 대한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침의 어떤 내용도 주 및 지방 집행 당국과 행정명령 202.17호의 지침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부과하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침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또는 뉴욕주 또는 뉴욕시 인권법(Human Rights Law)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각각 공공 또는 사적 사업체 및 공공시설을 폐쇄 또는 제한한 행정명령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10, 202.11, 202.13, 202.14, 202.28호의 항목을 확장한 행정명령 202.31호 및 10명을 초과한 모든 크기의 비필수 모임을 연기, 취소, 제한한 행정명령 202.33호로 수정된 행정명령 202.32호는 함께 뉴욕 일시 중단(New York On PAUSE)을 구성하며 이로써 향후 행정명령에 따라 개정 또는 연장되지 않는 한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 지역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결정한 규정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1단계 재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재개한 사업체 또는 단체는 보건부가 공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 2020년 5월 28일 자로 1단계 재개에 필요한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 서던 티어, 노스 컨트리, 웨스턴 뉴욕, 주도 지역, 미드 허드슨, 롱아일랜드. 이러한 지역에는 제네시,

리빙스턴, 먼로, 온타리오, 올리언스, 세네카, 웨인, 와이오밍, 예이츠, 카유가, 코틀랜드, 매디슨, 오논다가, 오스위고, 폴턴, 허키머, 몽고메리, 오네다, 옷세고, 쇼하리, 브룸, 셔명, 셔냉고, 델라웨어, 스카일러, 스투벤, 티오가, 톰킨스, 클린턴, 에섹스, 프랭클린, 해밀턴, 제퍼슨, 루이스, 세인트로렌스, 앨러게니, 카타라우구스, 셔터퀴, 이리, 나이아가라, 올버니, 컬럼비아, 그린, 사라토가, 스킨넥터디, 렌셀러, 워렌, 워싱턴, 더치스, 오렌지, 퍼트넘, 록랜드, 설리번, 얼스터, 웨스트체스터, 나소, 서퍽이 포함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추가 지역은 추가 개정 없이 본 행정명령에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1단계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